

제332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4월30일(목)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계속)

심사된 안건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2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장하나·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현·이석기·오병윤·박주선·이만우·서영교·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2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홍종학·진선미·신정훈·전정희·민병두·김승남·김기식·김윤덕·유은혜·남인순·이학영·우상호 의원 발의)(계속) 2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정록·박윤옥·강석호·민현주·정희수·민병주·김상훈·손인춘·전하진·이종훈·김명연·나성린·정용기·박인숙·권은희·이강후·김동완·이종진·황영철·송영근·경대수·이한구·박맹우·김학용·최봉홍·이에리사·김을동·김종훈·이병석·김기선·서상기·서용교·이채익·이학재·이인제·신동우·윤상현·강창희·조원진·이정현·박명재·박덕흠·김세연·김영우·이상일·홍지만·김현숙·문대성·강은희·이운룡·정병국·심윤조·김희선·류성걸·조현룡·여상규·김정훈·이우현·정미경·유의동·김태환·안홍준·김한표·강길부·이군현·원유철·김광립·이현승·유일호·이만우·김용태·심재철·이이재·강석훈·유승민·정수성·권성동·박대출·김성태·이노근·길정우·김성찬·장윤석·류지영·박성호·주호영·홍철호·김태호·박민식·문정림·윤명희·주영순·함진규·김종태·유재중·이현재·이재영·김태원·홍일표·정두언·홍문중·이한성·황진하·조해진·박창식·서청원·이종배·박대동·신경립·이주영·김제식·노철래·황인자·조명철·나경원·심학봉·이진복·안덕수·김재원·김태흠·안효대·이완구·김무성·이자스민·이완영·김재경·김희정·홍문표·이철우·송광호·정우택·최경환·이장우·김상민·김장실·염동열·신의진·김용남·강기윤·윤재옥·정문헌·김희국·정갑윤·이명수·김도읍·양창영·한선교·배덕광·진영 의원 발의)(계속) 2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임수경·인재근·전정희·김현·윤호중·은수미·이인영·김현미·설훈·이미경·한명숙·서영교·이학영·진선미·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2

(15시39분 개의)

○위원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박기춘·박완주·최규성·박지원·오제세·주승용·김우남·이윤석·백재현·이찬열 의원 발의)(계속)

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규 의원 대표발의)(이상규·장하나·김선동·김미희·김재연·이석현·이석기·오병윤·박주선·이만우·서영교·김재윤 의원 발의)(계속)

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원혜영·홍종학·진선미·신정훈·전정희·민병두·김승남·김기식·김윤덕·유은혜·남인순·이학영·우상호 의원 발의)(계속)

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하태경 의원 대표발의)(하태경·김정록·박윤옥·강석호·민현주·정희수·민병주·김상훈·손인춘·전하진·이종훈·김명연·나성린·정용기·박인숙·권은희·이강후·김동완·이종진·황영철·송영근·경대수·이한구·박맹우·김학용·최봉홍·이에리사·김을동·김종훈·이병석·김기선·서상기·서용교·이채익·이학재·이인제·신동우·윤상현·강창희·조원진·이정현·박명재·박덕흠·김세연·김영우·이상일·홍지만·김현숙·문대성·강은희·이운룡·정병국·심윤조·김희선·류성걸·조현룡·여상규·김정훈·이우현·정미경·유의동·김태환·안홍준·김한표·강길부·이군현·원유철·김광립·이현승·유일호·이만우·김용태·심재철·이이재·강석훈·유승민·정수성·권성동·박대출·김성태·이노근·길정우·김성찬·장윤석·류지영·박성호·주호영·홍철호·김태호·박민식·문정립·윤명희·주영순·함진규·김종태·유재중·이현재·이재영·김태원·홍일표·정두언·홍문중·이한성·황진하·조해진·박창식·서청원·이종배·박대동·신경립·이주영·김제식·노철래·황인자·조명철·나경원·심학봉·이진복·안덕수·김재원·김태흠·안효대·이완구·김무

성·이자스민·이완영·김재경·김희정·홍문표·이철우·송광호·정우택·최경환·이장우·김상민·김장실·염동열·신의진·김용남·강기윤·윤재옥·정문헌·김희국·정갑윤·이명수·김도읍·양창영·한선교·배덕광·진영 의원 발의)(계속)

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김상희·임수경·인재근·전정희·김현·윤호중·은수미·이인영·김현미·설훈·이미경·한명숙·서영교·이학영·진선미·양승조 의원 발의)(계속)

○위원장 이병석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을 심사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대표하여 정문헌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정문헌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 정문헌 위원입니다.

먼저 박기춘 의원, 이상민 의원, 박성효 의원, 원혜영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상정 의원이 소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상민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개정안 및 1건의 청원은 대안에 일부 내용이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하기로 하고, 박기춘 의원, 이상규 의원, 원혜영 의원, 하태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 조정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하고, 선거일 전 18개월부터 설치·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에 대하여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통보를 받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9명의 위원을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고, 선거구획정안 등을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3개월 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국회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하고, 소관 위원회는 지체 없이 심사하여 선거구법률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선거구획정안이 법률에 명백하게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1회에 한정하여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대상에서 선거구법률안은 제외하도록 하였고, 국회의장은 선거구법률안이 제안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하여야 하며, 본회의에서 선거구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 및 시행되더라도 내년 4월 13일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는 1년도 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의 부칙에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2016년도 4월 13일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법의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였고, 소관 위원회는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 8명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한 1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선거구획정안은 선거 전 6개월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심사에 수고해 주신 정문헌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률안심사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순서에 관계없이 신청한 분에 한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토론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민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식 위원 부산 북구 출신 박민식 위원입니다.

소위 여당·야당 간사님들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소위에서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아쉽게 생각을 하고 꼭, 전체회의에서 비록 통과는 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뭐냐면 이번 정개특위는 정말 역사적인 책무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핵심은 더 이상 국회의원들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획정위원회를 구성하라, 이것이 국민적인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의 내용에도 국회가 사실상 획정위의 결정사항에 대해서 수정 권한을 없애는 것, 또 두 번째로 국회의원 및 정당원 이런 사람들은 아예 획정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획정위를 국회로부터 독립한 기관에 설치하는 것, 이런 규정들이 다 그런 취지의 맥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법안 24조4항을 보면 획정위원 구성에 있어서 9명 중 8명, 어떻게 보면 90% 이상이지요. 8명에 대해서 ‘의결로 선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떻게 의결이 이루어질 것인지 상당히 애매하게 처리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가서는 우리 모두가 걱정하는 여야가 그동안 그랬듯이 주고받기 식으로 위원을 구성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국민들이 볼 때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 획정위원 구성에 있어서 여야의 대리전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8명을 국회에서 중심으로 추천을 하더라도 선관위 추천 1명으로는 부족하다, 외부인사 3명 정도 하는 것이 전체적인 취지에 맞지 않느냐, 균형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 대안을 제시했는데 소수의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대단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이라도 그런 측면에 대해서 전체회의에서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고.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 안전 중에 보면 1호 박기춘 의원, 3호 원혜영 의원, 4호 하태경 의원 이 여야 의원들이 제시한 개정안 내용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위원 구성에 있어서 대법원장이다, 선관위원장이다, 제3의 독립적인 데서 추천을 할

수 있는 위원들이 상당히 많이 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야 의원님들의 추천을 개정안도 발의한 마당이기 때문에 전체회의에서도 무겁게 생각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어떻든지 위원을 구성할 때는 24조4항 8명에 대하여 의결로 선정한다 이 규정을 정말로 무겁게 생각을 해서 국민들 눈에 아까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당의 입김 또 국회의원들의 입김이 사실상 배제될 수 있도록 무겁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촉구를 드리고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심상정 위원님!

○심상정 위원 소위에서 큰 합의가 있었는데 우려스러워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2쪽에 24조4항인데 거기 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박민식 위원님께서 여러 지적을 하셨지만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공정하고 독립적인 과정, 절차를 만든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구를 중앙선거 위 산하에 두는 만큼 외부인사의 추천을 받아서 합의하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한 정당의 개입이나 편향을 줄이고자 그동안에 논의가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정당’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김태년 간사께서 설명을 잠깐 하셨을 때 원외정당을 이야기한다고 하셨는데……

○소위원장 정문헌 다 포함……

○심상정 위원 원외정당까지……

그러면 원내정당들도 추천을 한다는 겁니까?

○소위원장 정문헌 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상정 위원 그래서 그 문제가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학계나 법조계나 언론계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추천을 한 것을 정개특위가 의결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거기다 정당 추천을 넣으면…… 원외정당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원외정당은. 그런데 원내정당의 경우는 심의하는 주체잖아요, 심의하는 주체. 그런데 또 거기에 추천권까지 주어 버린다는 것이 원래 우리가 논의했던 취지에 퇴색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 제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논의하실 때 이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가 제기하는 우려가 충분히 검토되었는지 답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잠깐만요, 우선 토론하실 분 신청하십시오.

김기식 위원님 토론하세요.

○김기식 위원 제가 오늘 좀 당황스러운데요, 통상 법안소위를 거쳐서 전체회의에 올라올 때는 법안소위 위원들은 토론을 안 하거든요. 그냥 본인들이 심사해서 의결한 법안을 놓고 법안소위에 안 들어간 위원들이 그것을 토론하지 어떻게 법안소위에 다 들어가셨던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어쨌든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 저는 정당을 추천 대상에 넣어야 될, 왜냐하면 국회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얼마든지 국회에서 의결 절차 과정에서 관여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정당이라는 표현을 꼭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운영할 때 사실은 굉장히 기술 실무적인 것들이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것을 지원하는 사무조직은 지금 누가 하는 건가요? 선관위에서 전적으로 하나요?

○소위원장 정문헌 같은 공무원들이 필요하면 부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지원하는……

○소위원장 정문헌 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상희 위원 선관위에서 하되 필요한 지원은……

○소위원장 정문헌 조문에 다 나와 있습니다.

○김기식 위원 그럼 거기서 다 조문 작업……

모든 지원은 그냥 선관위에서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돼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병석 문제 제기만 하세요. 왜냐하면 조금 이따 소위원장이 어차피 문제 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김기식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저희는 본회의하다가 이제 막 와서……

회의 시작할 때 이 법안을 받아서 법조문 본위원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미리 안 보는 그런 불성실한 위원이 아니고요.

○위원장 이병석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시는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김기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장 이병석** 그것을 얘기를 하세요.

○**김기식 위원** 그래서 여쭙 보는 것 아닙니까? 실무지원 조직을 어떻게 하기로 한 건지……

○**위원장 이병석** 그것 하나하고 또……

○**김기식 위원** 아니, 답변을 줘……

○**위원장 이병석** 일괄적으로 해야지 일문일답을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다음에 법안심사소위원장이 일괄해서……

○**김기식 위원** 지금 질문은 이것으로 끝나치고 필요하면 다시 질문할게요.

○**소위원장 정문헌** 여기 법조문이 있으니까……

○**경대수 위원** 24조12항에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소위원장 정문헌** 24조12항에 보면……

○**위원장 이병석** 가만있어, 발언권 얻어서 하세요.

김기식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의견을 피력하면서 질의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토론하실 분 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토론 겸 문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이 안을 심사한 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정문헌 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소위원장 정문헌** 일단 위원회 구성의, 박민식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9명의 구성 중에 3 대 3 대 3,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을 선관위·대법·기타 등에서 추천받아야 공정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갖는 입법권을 어떻게 보면 다 내려놓고 독립기관에 그 입법권을 행사하게끔 하는 과정에 있어서 양당이 나머지 8명을 여기서 충분히 추천을 받아서 의논을 해서 의결을 했을 때 그 부분의 공정성에 대해서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의결정족수를 3분로 2로 규정을 함으로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당 추천하는 부분은 아까도 소위에서 김태년 위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듯이 제반 정당들 다, 우리 해방 정국 때 모든 정당 사회 단체를 말씀드리듯이 원에 있는 정당들을 다 포함시키기 위해서 정당이라는 용어를 쓴 건데 그 안에 그럼 지금 교섭단체를 갖고 있는 정당도 포함된

게 아니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회의장에 앉아 있는 만큼 운영위원들을 선정할 때 여기 계신 여야 위원님들, 비교섭단체 심상정 위원님까지 다 협의해서 의결을 하는 만큼 충분히 자격을 갖춘 분들을 저희가 선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김기식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무처 관계는 법에 규정돼 있는데 좀 읽어 드리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30일부터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조직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설치한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위원장은 관계 국가기관에 그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법에 명시해 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소위원장께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윤덕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윤덕 위원** 김윤덕 위원입니다.

‘국회의 소관 상임위 또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함께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정당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 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 문제가 상당히 약화되고 걱정거리로 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학계 법조계 언론계 할 때 ‘농촌지역’ 항목을 넣어 줄 수 있나요?

○**소위원장 정문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5월 달서부터 선거구획정에 관한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마련해서 입법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그 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같이 논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논의를 하는 것하고 선거구획정 위원……

○**소위원장 정문헌** 저도 농어촌 위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기에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그래도 원칙을 지켜 가면서 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아직 여기에 다뤄지지는 않았습니. 5월에 저희가 아마 논의를 해서 6월 국회에 다시 추가로 입법

화시켜야 될 부분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김윤덕 위원** 추가로 입법화한다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위원장 이병석**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정문헌** 여기 선거구획정관리위원회 부분에서 아직 더 입법을, 추가 입법을 해야 될 부분이 선거구획정의 원칙과 기준을 지금은 그냥 ‘지자체 쪼개지 마라’ 하나만 있는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구체화시켜서 법제화를, 입법화를 시킬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기준을 만들 때 놓여준 문제도 같이 어떤 식으로 풀어갈 수 있을까를 논의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그 논의는 논의대로 하시고요. 당연히 논의해야지요.

그런데 실제 구체적인 것을 논의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예를 들면 법조계·언론계 이런 분들이 참여하도록 그중에 추천 받아서 하자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장 정문헌** 거기다가 ‘농어촌’을 집어넣기는 조금, 저도 농어촌이지만……

○**김윤덕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문제가 왜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왜 되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위원장 이병석** 김태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시민단체·법조계·언론계·학계·정당 등’ 해 놔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영역들도 다 열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소위원장 정문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정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병석** 아, 그래요. 신정훈 위원님.

○**신정훈 위원** 우리 정개특위 구성과정에서도 통합 대상인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대부분 원천 배제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획정위원회도 법조·언론·학계·시민단체·정당 그렇게 하면 대체로 수도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여기에 굳이 이 발언을 한 것은 시민단체나 언론계를, 추천권을 줄 때도 농업 관련단체가 최소한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달라, 이런 뜻으로 저는 다시 한 번 역제안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정문헌** 어쨌든 시민단체가 그 안에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저희가 유념하겠습니다.

니다.

○**위원장 이병석** 또 말씀하십시오.

○**김태년 위원** 김윤덕 위원님 취지가 제도가 어떻게 설계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겠습니까. 인구가 적은 지방이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는 염려를 담아서 하신 말씀 같은데요.

그래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염려까지 감안하여 국회에서 선정 의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방금 문제 제기의 취지를 살린다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명시해서 집어넣으면 좋겠는지, 아예 안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논의해서 반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윤덕 위원** 저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려니까 힘든데요. ‘지역 및농어촌 소외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 이 정도로 조정해 넣으면 어떨까요?

○**김태년 위원** 뭐라고요? 다시 한 번……

○**경대수 위원** 그냥 ‘농어민 관련단체’ 이렇게 하면……

○**김윤덕 위원** ‘농어민 관련단체’, 저도 괜찮습니다.

○**소위원장 정문헌** 너무 직능을 다 붙이고 좁혀지면……

시민단체 안에 농민단체도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김태년 위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학계도 보면 지방 행정학회도 있고, 또 언론도 보면 지방 언론도 있고, 법조계도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법조인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립적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취지를 정확하게 명시해서 법안에다가 집어넣을 수 없다면 그 취지를 살려서 다음에 선정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하는 것으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김윤덕 위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시민단체 안에 우리가 아까……

○**소위원장 정문헌** 농어촌단체가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의견을 충분히 받고 최대한 존중해 드릴게요.

○**위원장 이병석** 김윤덕 위원님이나 신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우리가 충분히 경청했습니다. 이 법안이 가져야 될 하나의 형평성이나 보

편성을 염두에 두고 봤을 때 그렇다고 해서 특정 계층 하나만을 구체적으로 특정화해서 그 대표를 넣어야 된다고 그렇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 기술 상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에 ‘시민단체’라고 규정한 이 내용 속에는 농어민단체도 들어가고 또 여러 NGO들이 다양하게 있는 만큼 그 점을 염두에 두시되, 또 여기에 선언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이 대상 자체가 특정된 것이 아니고 이런 분야의 좋은 분들을 추천받아서 특위 위원님들 전체 이 자리에서 최종 추천 의결을 합니다.

그럴 때 추천된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농어촌 부분이면 농어촌 부분에 여러 의견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여러 추천된 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해서 바로 이 정개특위에서 최종 추천 의결하도록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률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오늘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과 동일한 취지의 의사일정 제6항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한 의사일정 제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산회)

경대수	김기식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김희선	민현주	박대동
박민식	박범계	박영선	신정훈
심상정	여상규	유인태	이병석
정문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이창립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김용희
-------------------	-----